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(하영제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8919

발의연월일: 2021. 3. 19.

발 의 자:하영제·강민국·김도읍

김용판 · 김형동 · 박덕흠

박성민 · 서병수 · 서일준

윤창현 • 이헌승 • 정점식

의원(12인)

제안이유

현행법은 항공의학에 관한 전문교육을 받은 전문의사(이하 "항공전문의사"라 한다)로 하여금 항공신체검사증명의 업무를 하도록 하고 있으며 항공종사자 자격증명의 종류별 항공신체검사증명의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운항승무원 및 항공교통관제사는 종전 항공신체검사증명의 유효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에도 항공업무에 종사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음.

그런데 운항승무원 및 항공교통관제사가 유효기간 내에 항공신체검 사증명의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근 거가 미흡하며 부정한 방법으로 신체검사 증명을 받은 경우에 대한 제재조항의 실효성이 부족한 등 제도적 허점이 있다는 지적이 있음.

아울러 항공전문의사는 항공종사자의 항공신체검사증명업무를 수행 하여 항공안전에 중대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으며 개인의 신체 및 건강에 관한 민감한 정보를 처리하고 있는데, 이들에 대한 서류 제출의무 및 비밀유지 의무 등에 대한 규정이 없는 등 그 업무에 관한 제재조항이 미흡한 실정임.

이에 항공전문의사의 서류제출 및 보고 의무, 비밀유지 의무 등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고, 항공신체검사증명서를 받은 사람으로 하여금 신체상대의 저하가 발생한 경우 신고하도록 의무화하여 그간 미비했 던 제도를 보완하고자 하는 것임.

주요내용

- 가. 항공신체검사증명을 한정하여 발급하는 경우 그 대상과, 자격증명 등을 정지하는 경우 정지되는 자격증명의 종류를 명확하게 규정함 (안 제40조제4항 및 제43조제1항).
- 나. 항공신체검사증명을 받은 자가 신체상태의 저하가 있는 경우 그 사실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하고, 이를 통보하지 않은 경우 자격증명등을 정지 또는 취소할 수 있도록 함(안 제42조 및 제43조제1항제8호의2).
- 다. 항공신체검사증명이나 자격증명등을 받는 사람이 그 시험이나 심사 또는 검사에서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 적발한 날부터 2년간 시험이나 심사 또는 검사를 받을 수 없도록 규정함(안 제43조제4항).
- 라. 국토교통부장관이 항공안전의 확보를 위하여 업무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서류를 제출하게 할 수 있는 대상에 항공전문의사와

소속 의료기관을 포함함(안 제132조).

마. 항공종사자 자격증명과 항공신체검사 업무를 통해 알게 된 의료기록 등 개인정보의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직무 목적 외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, 이를 위반한 경우에 제재조항을 신설함(안제136조의2).

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

항공안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0조제4항 중 "범위를"을 "범위 또는 유효기간을"로 한다.

제42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(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) 중 "항공업무(제46조에 따른 항공기 조종연습 및 제47조에 따른 항공교통관제연습을 포함한다)"를 "항공업무(제46조에 따른 항공 기 조종연습 및 제47조에 따른 항공교통관제연습을 포함한다. 이하 이조에서 같다)"로 하며, 같은 조에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② 제40조제1항에 따른 항공신체검사증명을 받은 운항승무원 및 항공교통관제사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신체상태의 저하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제49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항공전문의사의 소견서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.
- ③ 국토교통부장관이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자격증명의 종류별 항공신체검사증명의 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확인하여 그 결과를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
- ④ 제2항에 따라 신체상태 저하 사실을 신고한 사람은 제3항에 따른 결과를 통지받기 전까지 항공업무에 종사해서는 아니 된다.

제43조제1항에 제8호의2 및 제8호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,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5항까지로 하며, 같은 조 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, 같은 조 제4항(종전의 제3항) 중 "그 부정한 행위를 한"을 "그 부정한 행위를 적발한"으로 한다.

- 8의2. 제42조제2항을 위반하여 신체상태의 저하 사실을 신고하지 않 은 경우
- 8의3. 제42조제4항을 위반하여 제3항에 따른 결과를 통지받기 전에 항공업무를 수행한 경우
- ② 제1항에 따라 효력정지를 명하는 경우 그 효력정지의 대상에 운송용 조종사에 대해서는 부조종사 및 사업용·자가용 조종사 자격증명을, 사업용 조종사에 대해서는 자가용 조종사의 자격증명을 포함한다.

제44조제4항 중 "제3항"을 "제4항"으로 한다.

제45조제6항 전단 중 "제3항"을 "제4항"으로 한다.

제50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② 제1항제1호에 따라 항공전문의사 지정 취소 처분을 받은 사람은 그 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간 이 법에 따른 항공전문의사 지정을 신청할 수 없다.

제125조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③ 제2항에 따른 처분의 세부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 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.

제132조제1항에 제6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6의2. 제49조에 따른 항공전문의사

제134조제9호 중 "제2항"을 "제3항"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3호 중 "효력정지"를 "효력정지(제50조제1항제8호의 경우는 제외한다)"로 한다.

제135조제5항제11호 중 "제125조제3항에"를 "제125조제4항에"로 하고, 같은 조 제6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1의2. 제42조제2항에 따른 항공신체검사 보유자의 신체저하 등의 신고에 대한 접수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항공신체검사증명 기준에의 적합성여부 및 그 결과 통지에 관한 업무

제13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제136조의2(비밀유지 의무)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다른 사람의의료 기록 등 개인정보의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외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.
 - 1. 제34조에 따른 항공종사자 자격증명 업무
 - 2. 제40조에 따른 항공신체검사 증명 업무

제16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63조의2(비밀유지 위반의 죄) 제136조의2를 위반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이를 직무상 목적 외에

사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

부 칙

- 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 다만, 제42조, 제43조제1항제8호의2 및 제8호의3, 제135조제6항의 개정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2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.
- 제2조(시험 응시제한 등에 관한 적용례) 제43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법 시행 이후 같은 조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처분을 받은 사람부터 적용한다.
- 제3조(항공전문의사 지정 신청에 관한 적용례) 제50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50조제1항제1호의 사유로 항공전문의사 지정 취소 처분을 받은 사람부터 적용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40조(항공신체검사증명) ① ~	제40조(항공신체검사증명) ① ~
③ (생 략)	③ (현행과 같음)
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	4
따른 자격증명의 종류별 항공	
신체검사증명을 받으려는 사람	
이 제2항에 따른 자격증명의	
종류별 항공신체검사증명의 기	
준에 일부 미달한 경우에도 국	
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	
따라 항공신체검사를 받은 사	
람의 경험 및 능력을 고려하여	
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	
해당 항공업무의 <u>범위를</u> 한정	<u>범위 또는 유효</u>
하여 항공신체검사증명서를 발	<u>기간을</u>
급할 수 있다.	<u>.</u>
⑤・⑥ (생 략)	⑤·⑥ (현행과 같음)
제42조(항공업무 등에 종사 제한)	제42조(항공업무 등에 종사 제한)
제40조제2항에 따른 자격증명	<u> </u>
의 종류별 항공신체검사증명의	
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운항	
승무원 및 항공교통관제사는	
종전 항공신체검사증명의 유효	
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에도 <u>항</u>	

조종연습 및 제47조에 따른 항 공교통관제연습을 포함한다)에 공교통관제연습을 포함한다. 이 종사해서는 아니 된다.

<신 설>

<신 설>

<신 설>

공업무(제46조에 따른 항공기 항공업무(제46조에 따른 항공기 조종연습 및 제47조에 따른 항 하 이 조에서 같다)-----

- ② 제40조제1항에 따른 항공신 체검사증명을 받은 운항승무원 및 항공교통관제사는 국토교통 부령으로 정하는 신체상태의 저하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 을 제49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항공전문의사의 소견서를 첨부 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 하여야 한다.
- ③ 국토교통부장관이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지 체 없이 자격증명의 종류별 항 공신체검사증명의 기준에 적합 한지의 여부를 확인하여 그 결 과를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
- ④ 제2항에 따라 신체상태 저 하 사실을 신고한 사람은 제3 항에 따른 결과를 통지받기 전 까지 항공업무에 종사해서는 아니 된다.

제43조(자격증명·항공신체검사 증명의 취소 등) ① 국토교통 부장관은 항공종사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증명이나 자격증명의 한정(이하 이 조에서 "자격증명등"이라 한다)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자격증명등의 효력정지를 명할 수 있다. 다만, 제1호 또는 제3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자격증명등을 취소하여야 한다.

1. ~ 8. (생 략) <u><신 설></u>

9. ~ 31. (생 략) <신 설>

제43조(자격증명·항공신체검사
증명의 취소 등) ①
·.
1. ~ 8. (현행과 같음)
8의2. 제42조제2항을 위반하여
신체상태의 저하 사실을 신
고하지 않은 경우
8의3. 제42조제4항을 위반하여
제3항에 따른 결과를 통지받
기 전에 항공업무를 수행한
<u>경우</u>
9. ~ 31. (현행과 같음)
② 제1항에 따라 효력정지를
명하는 경우 그 효력정지의 대
상에 운송용 조종사에 대해서
는 부조종사 및 사업용・자가

② (생략)

③ 자격증명등의 시험에 응시하거나 심사를 받는 사람 또는 항공신체검사를 받는 사람이 그 시험이나 심사 또는 검사에서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에는 그 부정한 행위를 한 날부터 각각 2년간 이 법에 따른 자격증명등의 시험에 응시하거나심사를 받을 수 없으며, 이 법에 따른 항공신체검사를 받을 수 없다.

④ (생 략)

제44조(계기비행증명 및 조종교 육증명) ① ~ ③ (생 략)

④ 제1항에 따른 계기비행증명 및 제2항에 따른 조종교육증명 의 시험 및 취소 등에 관하여 는 제38조 및 제43조제1항·제 3항을 준용한다.

제45조(항공영어구술능력증명) ① ~ ⑤ (생 략)

용 조종사 자격증명을, 사업용
조종사에 대해서는 자가용 조
종사의 자격증명을 포함한다.
③ (현행 제2항과 같음)
<u>4</u>
그 부정한 행위를 적발한
<u>⑤</u> (현행 제4항과 같음)
제44조(계기비행증명 및 조종교
육증명) ① ~ ③ (현행과 같
음)
4
<u>제4</u>
<u>ō</u> }
제45조(항공영어구술능력증명) ①
~ ⑤ (현행과 같음)

- ⑥ 항공영어구술능력증명의 취소 등에 관하여는 제43조제1항 제1호 및 같은 조 제3항을 준용한다. 이 경우 "자격증명등"은 "항공영어구술능력증명"으로 본다.
- 제50조(항공전문의사 지정의 취 저소 등) ① (생 략) <<u>신 설></u>

② (생략)

제125조(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저 증명 등) ①・② (생 략) <신 설>

③ (생략)

제132조(항공안전 활동) ① 국토 저 교통부장관은 항공안전의 확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그 업무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서류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.

6
<u>제4항</u>
<u>.</u>
제50조(항공전문의사 지정의 취
소 등) ① (현행과 같음)
② 제1항에 따라 항공전문의사
지정 취소 처분을 받은 사람은
그 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간
이 법에 따른 항공전문의사 지
정을 신청할 수 없다.
③ (현행 제2항과 같음)
제125조(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
증명 등) ①・② (현행과 같음)
③ 제2항에 따른 처분의 세부
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
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.
<u>④</u> (현행 제3항과 같음)
제132조(항공안전 활동) ①

- 1. ~ 6. (생 략) <신 설>
- 7. (생략)
- ② ~ ⑨ (생 략)
- 제134조(청문)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.
 - 1. ~ 8. (생략)
 - 9. 제43조제1항 또는 <u>제2항</u>에 따른 자격증명등 또는 항공 신체검사증명의 취소 또는 효력정지
 - 10. ~ 12. (생략)
 - 13. 제50조제1항에 따른 항공전 문의사 지정의 취소 또는 <u>효</u> <u>력정지</u>
 - 14. ~ 25. (생략)
- 제135조(권한의 위임·위탁) ① ~ ④ (생 략)
 -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「한국교통안전공단법」에 따른 한국교통안전공단(이하 "한국교통안전공

1. ~ 6. (현행과 같음)
6의2. 제49조에 따른 항공전문
<u>의사</u>
7. (현행과 같음)
② ~ ⑨ (현행과 같음)
제134조(청문)
1. ~ 8. (현행과 같음)
9 <u>제3항</u>
10. ~ 12. (현행과 같음)
13
<u>ā</u>
력정지(제50조제1항제8호의
경우는 제외한다)
14. ~ 25. (현행과 같음)
제135조(권한의 위임·위탁) ①
~ ④ (현행과 같음)
⑤

단"이라 한다) 또는 항공 관련 기관·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. 1. ~ 10. (생 략)

- 11. 제125조제3항에 따른 실기시험장, 교육장 등 시설의 지정・구축・운영에 관한 업무
 12.・13. (생략)
-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항공의학 관련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수 있다.
- 1. (생략)

<신 설>

 2. (생 략)

 ⑦・⑧ (생 략)

 <신 설>

1. ~ 10. (현행과 같음)
11. <u>제125조제4항</u>
12. • 13. (현행과 같음)
<u>⑥</u>
1. (현행과 같음)
1. (년 8 7 월 B P P P P P P P P P P P P P P P P P P
1 - 1 2 . 제 4 2 도 제 2 등 대

- 1의2. 제42조제2항에 따른 항공 신체검사 보유자의 신체저하 등의 신고에 대한 접수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항공 신체검사증명 기준에의 적합 성여부 및 그 결과 통지에 관한 업무
- 2. (현행과 같음)
- ⑦ ⑧ (현행과 같음)
- 제136조의2(비밀유지 의무)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다

<u><신</u>설>

른 사람의 의료 기록 등 개인 정보의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 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에 사용 하여서는 아니 된다.

- 1. 제34조에 따른 항공종사자 자격증명 업무
- 2. 제40조에 따른 항공신체검사 증명 업무

제163조의2(비밀유지 위반의 죄)
제136조의2를 위반하여 업무를
수행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비
밀을 누설하거나 이를 직무상
목적 외에 사용한 자는 3년 이
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